## 청약철회 신청서

## ㈜ 예가람저축은행 귀중

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(청약의 철회)에 따라 신청인(본인)은 예가람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아래과 같이 대출계약 청약철회를 신청합니다.

[아 래]

이름	생년월일	년	월	일
주소	연락처			
청약철회신청일				

※ 일반금융소비자만 대출계약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.(개인 및 개인사업자, 5인 미만 법인, 5인이상 법인 중 일반 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)

대출실행일	20 년 월 일	청약철회 신청기한	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(또는 계약체결)로부터 14일 이내 (단, 계약에 따른 금전·재화·용역의
대출금액	원		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)
청약철회신청사유	□ 단순변심 □ 조건(금리, □ 기 타 (	,한도등)에 대한 )	· 불만

- 1. 대출계약 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(청약의 철회)에 의해 철회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, 철회기간이 내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,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.
- 2. 대출계약 청약 철외 기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.

신청인(본인)은 대출계약 청약철회권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20	년	월	일	신청인 :	(인/서명)
----	---	---	---	-------	--------